

준법통제규정시행세칙 제 · 개정 사전예고

1. 제·개정 이유

효율적인 준법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제안함

2.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준법통제기준 준수점검 주기를 명문화함

나. 준법통제기준 준수점검을 위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에 주요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체크리스트 갱신을 의무화함

3. 의견제출

이 제 ·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21년 3월 2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 리스크준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11층 리스크준법실
- 담당자(이메일) : 류재은(rje@khug.or.kr)
- 전화번호 : 051-955-5878
- 팩스번호 : 051-955-2250

4. 예고기간 단축사유(기간 20일 미달 시)

효율적인 준법리스크관리를 위하여 조속한 개정 필요

[붙임]

준법통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4조(준법통제기준 준수점검) ① 주관부서장은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준법통제기준 준수여부를 <u>점검할 수 있다.</u>	제14조(준법통제기준 준수점검) ①----- ----- <u>준수여부를 연1회 이상</u> <u>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준수점검 수행 주기를 정함 (감사권고 사항)
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점검을 위하여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별지서식제2호) 등을 <u>시행할 수 있다.</u>	②----- ----- <u>시행할 수 있으며, 주요업무의</u> <u>누락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u> <u>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u>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3월 00일부터 시행한다.	체크리스트 갱신절차를 규정함 (감사권고 사항)